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해외 선교에 어떤 영향 미칠까?

세무·법률·선교 현장 관점서 한국교회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비 송금과 선교 재정 운영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선교비 증여세 대응 정책 토론회가 최근 CTS기독교TV 사옥 11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CTS문화재단 노랑진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CTS기독교TV가 후원했으며, '상속세 시행령이 한국교회 선교에 미칠 영향' 해외 선교 송금,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영근 회계사가 '법령의 실제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이어 권순철 변호사가 '상증세법 시행령의 법률적 검토'를 주제로 법률적 쟁점을 짚었고, 김찬곤 목사가 '한국 선교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선교 현장의 우려와 과제를 제시했다.

김영근 회계사는 발제에서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 그는 이번 개정으로 종교 공익사업의 주체가 '거주자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제한되고, 해

외 종교단체와 해외 선교단체에 대한 지원이 기존보다 엄격한 세무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교회가 해외 교회나 현지 선교단체, 선교사 개인에게 재정을 지원할 경우 수령 주체와 사용 목적, 증빙 자료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계사는 해외 선교비 지출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관행적 송금 방식으로는 세무 리스크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교회가 선교비를 집행할 때 정기 사례비, 선교사 생활비, 자녀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교회 사역비, 구제비, 장비 구입비 등 지출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송금 목적과 수령자, 실제 사용 내역, 영수증과 보고서 등 사후 증빙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권순철 변호사는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의 법률적 쟁점을 검토했다. 권 변호사는 이번 개정이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해외 공익사업 지원 범위를 조정할 데서 비롯



'선교비 증여세 대응 정책 토론회'가 CTS기독교TV 사옥 11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다니엘 최 기자



김영근 회계사가 '법령의 실제에 대한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다니엘 최 기자



권순철 변호사가 '상증세법 시행령의 법률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다니엘 최 기자



김찬곤 목사가 '한국 선교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다니엘 최 기자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교단체의 해외 선교와 구호 활동이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종교 활동과 공익 목적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이를 일반적인 증여와

동일하게 판단하는 데에는 법률적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특히 종교의 자유, 평등 원칙, 조세법률주의, 위임임법의 한계, 과잉금지원칙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시행령 개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해외 선교비 지원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헌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불법적인 해외 자금 은닉이나 세무 회피는 엄격히 차단해야 하지만, 투명하게 진행되는 해외 선교와 구호 활동에 대해서는 조세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김찬곤 목사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한국교회의 선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해외 선교사와 현지 교회, 학교, 병원, 구호 사역 등을 지원해 왔으며, 선교비 송금에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현지 사역자와 선교지 공동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목사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세무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선교비 송금은 단순한 재

정 이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기기 위한 사역의 통로라며, 한국교회가 제도 변화에 대응하되 선교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재정 지원 중심의 선교를 넘어 현지 교회와 동역하는 선교, 함께 배우고 세워가는 동반자적 선교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교회가 변화된 제도 환경 속에서 해외 선교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 내부 회계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해외 선교비 집행 과정에서 송금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령 기관의 성격과 사용 내역을 기록하며, 필요한 경우 고단과 선교단체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사례도 참고점으로 제시됐다. 이들 국가는 해외 단체에 재정을 지원할 때 자금 사용에 대한 통제권, 사후 보고, 집행 내역 확인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한국교회 역시 선교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면서도, 선교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니엘 최 기자

한복협, 회칙에 없는 위원회 주연종 목사 부위원장 임명 논란

오정호 회장, '남북통일 부위원장'으로 소개...

한복협 측, "회칙에 없는 줄 몰랐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이하 한복협)가 회칙을 개정한 당일, 정작 회칙에 없는 '남북통일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사랑의교

대광기총, '대한민국 자유
수호 국민대성회' 연다 》3면

아프간 소녀들 비공식 학
습 확산 "교실 문 닫혀도" 》9면

Y-WAVE 공개오디션...

전남·여수 순천·광양에서 》24면

회 주연종 부목사를 임명했다. 조직 운영의 기준을 정비한 자리에서 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직책을 부여하면서, 회칙 개정과 인선 사이의 모순이 드러났다.

한복협은 최근 서울 백석대 교육동 10층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회칙을 개정한 뒤 각 부서 위원장을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회장 오정호 목사는 주 목사를 "남북통일 부위원장"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이날 개정된 회칙 제11조에 부서로 명시된 위원회는 신학교회경신선교·사회·국제·여성·청년위원회 등 7개다. '남북통일위원회'는 여기에 없다. 개정 전 회칙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해당 위원회를 회칙에서 찾을 수 없는데 부위원장 임명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특히 회칙을 검토하고 개정안을 의결한 직후의 인선이라는 점에서, 조직 구성과 임명 근거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한복협 임시총회가 서울 백석대 교육동 10층 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규진 기자

의문을 남겼다. 운영 기준을 새로 정한 총회에서부터 그 기준과 실제 인선이 어긋난 것이다.

한복협 내부에서는 회칙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는 활동할 수 없으며, 주 목사의 부위원장 임명 역시 무효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 자체의 근거가 없는 만큼 그 안의 직책에도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본지는 한복협 회장 오정호 목사에게 이와 관련 전화와 문자로 질의 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사무총장 박명수 교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남북통일위원회가) 당연히 있는 줄 알았다"며 "회칙에 없는줄" 몰랐다"고 답했다. 박 교수는 다음 모임 때 해당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규진 기자

이란 기독교 박해 현실 확인... 국내 난민 인정, 한국교회 사명 일깨우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이란인이 국내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며, 이란 내 박해 현실과 신앙을 위한 용기가 동시에 조명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의 핵심 근거로 이란 내 기독교인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제시했다.

이슬람 신정 체제 하에서 기독교 개종은 엄격히 금지되며, 개종자들은 고발과 투옥의 위협, 사회적 차별과 배제라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신앙을 이유로 본국에서 강제적 박해를 피할 수 없는 이들에게 난민 지위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다.

이슬람을 떠나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엄청난 신앙적 결단이다. 이러한 용기 있는 선택은 세상의 핍박 속에서 오직 복음의 진리를 따르겠다는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며, 2026년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적 가치와 헌신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이번 판결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깊은 관심과 기도를 촉구하는 강력한 영적 메시지이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땅에서 신음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한 적극적인 중보와 실질적인 연대가 절실하며, 국제 사회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줄 한국교회의 책임 의식을 새롭게 고취해야 할 때다.

2026년 9월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단 한 개인의 난민 인정을 넘어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연대와 기도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국제적 종교 박해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영 기자

액상 향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 055-286-9004

도료 / 라텍스



가전/가구 필름



기능성 페인트



라텍스 장갑



도어락/손잡이



차량용 필름/디스플레이



생활용 도료/코팅액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향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